



- 취약분야 예방적 점검을 위한 -

특정감사 결과 보고

2026. 10.

감 사 실

- 취약분야 예방적 점검을 위한 -

특정감사 결과 보고

- ◆ 정보보안, 인수인계, 예산집행 등 주요 취약분야의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I

시행근거

- 「감사규정」 제2조(감사의 직무) 제1호
- 「감사규정 시행내규」 제2조(감사의 종류) 제2호

(특정감사)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
- 2026년 감사 추진계획(안)
- 취약분야 예방적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계획(안)

II

감사개요

- (감 사 명) 「주요 취약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」
- (감사기간) 2026. 6. 1.(월) ~ 6. 26.(금)
- (감사범위) 2025. 1. ~ 2026. 4.
 - 정보보안 : 정보 보안 강화시스템 구축('25.下) 이후 개인정보 등 관리 적정성
 - 예산집행 : 업무용 차량 관리, 전산기기 관리, 시간외 근무 적정성
 - 취약시기 업무처리 : 조직개편 시기 인수인계 적정성 등
- (감 사 반) 감사실장 외 3명

구분		직위(급)	성명
감사반장		감사실장	○○○
감사팀	감사반원	감사팀장	○○○
	감사반원	부장	○○○
	감사반원	부장	○○○

Ⅲ

감사결과

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○ [정보보안관리] 사내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개선

-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업무에 부여된 전산시스템*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적기에 회수되지 않거나 신규 권한과 기존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례가 확인됨

* 임직원 인사정보, 계약정보,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처리 메뉴

- 인사발령 정보와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간 연계가 미흡하고, 권한 부여 이후 불필요한 권한을 점검·정비하는 관리 체계가 개선 및 보완 필요

⇒ 개인정보 접근권한 점검 및 정기적인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

○ [정보보안관리] 민간사업자 공모 등에 사용하는 웹폴더시스템 개선

- 민간사업자 공모 시, 공모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공사 웹메일의 부가기능인 웹폴더를 사용하고 있음
- 해당 웹폴더 접속 시, 응모업체별·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부여 할 수 없는 구조로 공모 담당자와 응모자가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
- 응모 업체별·사용자별로 계정과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이용자 식별 및 접근통제가 어렵고, 개인정보 및 영업상 중요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가 취급되고 있어 자료 유출 및 무단 접근 위험이 존재

⇒ 전용 시스템 구축 또는 웹폴더의 개별 계정 부여 등 기능 개선

○ [전산기기관리] 태블릿 PC 관리 철저

- 2021.10. 현장업무 지원용 태블릿 PC 100대를 구매하였으나, 2025.7.15. 기준 사용 중인 기기는 14대에 불과하고 86대는 데이터 요금제 해지 또는 미개통 상태로 미사용 중임
- 2026.10.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불용 여부 및 활용방안을 적기에 결정하는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

⇒ 태블릿 PC(자산)에 대한 추가활용 방안 마련 또는 불용 검토

○ [업무용차량관리] 고정배차차량 등 운영·관리 개선

- 고정배차차량 감축기준 및 운행정보 등 관리체계 마련

- 고정배차 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감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, 실제 업무수요나 차량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임
- 또한, 운행일지 중심의 사후관리로 실제 운행시간·경로·가동률 등 객관적인 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·분석할 수 있는 관리 체계 필요
- 차량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, 사고내용, 피해 및 처리결과 등 사고정보를 차량관리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보고체계가 부재함
- 운행 후 운행일지를 적기에 작성하지 않고 지연·일괄 작성함에 따라 주요 정보가 누락되거나, 당일 주행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과대 산정되는 등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함

- 자동차보험 연령제한 사전확인절차 부재

- 업무용 차량 운전 시 만 26세 미만 운전자의 보험 제한조건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이 업무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분쟁 우려

- 운전원에 대한 규정 적용 불명확 및 정비 필요

- 현행 「차량관리규정」 상 '운전원'의 정의 및 주의의무·금지사항(담당차량 이탈, 타인 운전 금지 등)이 차량관리실 소속 운전직 직원 중심으로 해석되어, 고정배차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업담당부서 일반 직원에게 적용 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규정 정비 필요

⇒ 업무용 차량운행정보 관리체계 개선, 차량사고보고 및 차량보험 적용 확인절차 마련, 차량관리규정 정비

○ [사무인계인수] 사무인수·인계 관련 성실의무 위반

-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위반

- 관련자 ○○○○○은 업무 분장상 '예산결산'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, 총괄 담당자인 ●●●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었음
- 이후, ●●●의 ▲▲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이 주된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결산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, 2026.＊＊.＊＊.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도 관련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

– 소관업무 관리·감독 소홀

- 관련자 ◆◆◆팀장은 담당(업무대행) 직원이 예산결산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·점검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함

○ [사무인계인수]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개정 필요

–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근거 미비

- 팀장 이하 직원에게 적용하는 사무인계인수서 서식 및 작성 기준이 현행 「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근거 마련 필요

– 사무인계인수 관련 서식 및 결과보고 체계 불합리

- 공사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별지 서식이 존재하고, 인수인계 결과보고 체계도 현행 규정과 실제 운영이 상이하여 정비 필요

– 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 발생 시 업무대행자 지정

- 병가 등으로 10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어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책임 한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

⇒ 사무인수인계 관련 규정 정비, 장기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근거 마련

□ 감사 처분

○ 처분요구 현황

계(건)	행정상(건)						재정상 조치(건)	신분상 조치(건)
	소계	통보	권고	개선	시정	주의		
12	10	1	2	4	1	2	-	2

○ 처분요구 목록

구분	처분내용	처분요구(안)			
		행정상	신분상	대상	
정보 관리	1. 사내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개선				
	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업무 철저	주의	-	■■■■■	
	개인정보 접근권한 전수점검 및 정기적인 점검체계 마련	시정	-		
	2. 민간사업자 공모 등에 사용하는 웹폴더 시스템 개선				
	민간사업자 공모 시 사용하는 웹폴더시스템 개선	개선	-	■■■■■, ▲▲▲▲▲	
전 산 기 관 리	3. 태블릿 PC 관리 철저				
	태블릿 PC(자산)에 대한 추가 활용방안 마련 또는 불용 처리 필요	권고	-	■■■■■	
업무용 (고정배차) 차량관리	4. 고정배차차량 등 운영·관리 개선				
	차량관제시스템* 도입 등 업무용 차량 관리체계 개선	개선	-	■■■■■	
	차량 사고보고체계 개선, 고정배차차량 운전자 주의의무 규정 등에 대한 차량관리규정 정비	개선	-		
	자동차보험 운전연령 제한조건 안내 및 확인절차 마련	권고	-	■■■■■, ▲▲▲▲▲, ◆◆◆◆◆, ●●●●●, ○○○○○, ◇◆◆◆◆	
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관리 업무 철저	주의	-			
사 무 인 수 인 계	5. 사무 인수인계 관련 성실의무 위반				
	취업규정 제6조의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	-	경고	●●●	
	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 지휘 및 관리·감독 소홀	-	주의	◆◆◆	
	6.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개정 필요				
	팀장 이하 사무인수인계 서식 등에 대한 사무인수인계 시행내규 정비	개선	-	■■■■■	
	병가 사용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, 업무대행자 지정하는 근거 마련	통보	-		

IV

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□ 심의개요

- (근거규정)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(감사결과심의위원회)
- (심의일시) 2026. 10. 8.(목), 14:00
- (심의내용) 취약분야 예방적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 결정(안)
- (심의결과) 감사결과 처분요구(안) 6건 “원안가결”

V

행정사항

□ 감사결과 처분요구

- (처분요구 조치) 감사결과 12건 처분요구

계(건)	행정상(건)						재정상 조치(건)	신분상 조치(건)
	소계	통보	권고	개선	시정	주의		
12	10	1	2	4	1	2	-	2

- (조치결과 제출기한)

- 현지조치 : 즉시
- 징계, 경고, 훈계, 주의 : 1개월 이내
- 통보, 권고, 시정 : 2개월 이내
- 변상명령, 개선 : 3개월 이내
- * 公社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16조(처분요구 조치)